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

지정번호	2024-12호	지정연월일	2024년 4월 26일
신청인	회사명(성명) 주식회사 큐비즈코리아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110111-5806893	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27, 지하1층(삼성동)		
	대표자 이창욱, 홍찬기		
지정 대상 기술·서비스	명칭 및 주요내용 (명칭)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(주요내용) 도심지 건물 내 일정 공간 시설을 이용자에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대여해 주고, 관리하는 서비스		
유효기간	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		
지정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(특례내용) 주식회사 큐비즈코리아가 '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'를 실증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 대해 2년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(조건) 불입의 '부가조건'을 준수할 것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.

2024년 4월 26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

< 부가 조건 >

1. 안전 등을 위해 물품 보관·적재에 따른 구조·안전, 피난·방화 문제 측면에서 검토 대책 마련
2.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에 보고